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81
----------	------

2025년 9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5년 8월 11일
다.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라. 상정일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9월 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62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추진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위탁 사무 내용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인권컨설팅 사업
 -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기간 : 3년(2026.1.1.~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78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3백만원, 운영비 4백만원, 사업비 5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사)국제아동인권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이하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1.~2028.12.) 본 사무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본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에 따른 시장의 소관사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형 위탁¹⁾)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 연수, 학습 등에는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구 분	시설형 및 자립형 민간위탁	사무형 민간위탁
위탁기간	3년 이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 다른 법령·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재계약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재계약 제한	개정 전	재계약 1회에 한해 가능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현재	모든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1회(3년 이내)로 제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신설(2023.10.4., 2024.4.5. 시행)

출처 : 2024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5p

- 1) 사무형 위탁 :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목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 위탁사무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인권컨설팅 사업
 -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최초위탁 : 2014. 6. 27.
 - 위탁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78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3백만원, 운영비 4백만원, 사업비 5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 평생교육국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증진 및 인권보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은 2014년 최초 위탁하여, 지금까지 11년간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이하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억 7천 8백만원 (2025년)의 예산으로 1개 분야, 3개 사업,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현황 〉

- 명 칭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901호 (내수동, 대우빌딩)
- 설립목적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내·외 인식확대를 도모하고 아동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동인권의 이행을 촉진
- 주요사업 : 아동인권교육, 아동인권 전문강사 양성, 아동인권교육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아동 참여증진 사업, 아동인권증진 캠페인, 아동권리포럼, 아동인권 네트워크,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 연구 자문/컨설팅 활동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1년 6개월 ('14. 6. 27.~'15. 12. 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공개모집
2차 위탁	1년 ('16.1.1.~'16.12.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재계약
3차 위탁	3년 ('17.1.1.~'19.12.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공개모집
4차 위탁	2년 ('20.1.1.~'21.12.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재계약
5차 위탁	2년 ('22.1.1.~'23.12.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재계약
6차 위탁	2년 ('23.1.1.~'25.12.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재계약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사업구성 〉

연번	항 목	사업내용	목표	
	3개 사업	6개 프로그램		
1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어린이·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160회, 3,275명
		역량강화과정	시설종사자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역량강화과정 운영	5회, 15명
		강사진 관리	간담회, 슈퍼비전	2회, 28명
		교육 홍보	교육 홍보 실시	수시, 불특정다수
2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분석	32회, 3,275명	
3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시설(청소년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컨설팅 실시	12개소	

〈 2025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2〉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183,504	100%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78,370	97.2%	183,719	-
		민간위탁사업비	-	-	-	-
	보조금	국비보조금	-	-	-	-
		시비보조금	-	-	-	-
		구비보조금	-	-	-	-
	사업수입	교육문화사업수입	-	-	-	-
	사업외 수입	법인전입금	-	-	-	-
		이월금	5,099	2.8%	-	-
		기타잡수입	35	0%	-	-
세출 예산	계	183,504	100%		100%	
	인건비	122,668	66.8%	126,347	68.8%	
	운영비	4,683	2.6%	4,823	2.6%	
	사업비	51,019	27.8%	52,549	28.6%	
	사업외지출	-	-	-	-	
	예비비	-	-	-	-	
	지난년도지출	-	-	-	-	
	반환금	5,134	2.8%	-	-	
	일반관리비	-	-	-	-	
	이윤	-	-	-	-	
	부가가치세	-	-	-	-	

출처 : 평생교육국(2025.6.25.), 민간위탁(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운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발취

2) 기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과 총 세입세출예산 차이(6백만원) 발생함.

구분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총액	178백만원	184백만원
산출근거	인건비(123백만원), 운영비(4백만원), 사업비(51백만원)	인건비(123백만원), 운영비(5백만원), 사업비(51백만원)
확인결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세입세출 총액(184백만원)이 아닌 민간위탁금(178백만원)을 총액으로 기재함.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청소년정책과 자체평가)에 따르면, 2024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개최 실적(교육횟수, 교육인원)은 목표를 상회하고 있으나, 성과분야 평가결과를 점수화하여 반영하고 있지 않음.

- 해당 센터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정책과 지도점검 이외에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바, 본 동의안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자료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원 미만의 사무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조직담당관-1700호, 2024.2.14.)’에 따라 2024년 종합성과평가부터 모든 민간위탁 사무가 평가대상으로 확대됨.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성과지표 대비 실적 >

구 분	교육횟수(회)		교육인원(명)		인권교육 강사양성	모니터링	컨설팅
	목표	실적	목표	실적			
2024년	174	185 (106.3%)	3,425	3,494 (101.0%)	8명/ 8명 수료	총 35회	우리동네키움센터 10개소, 청소년센터 17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2025년 6월말 기준	160	108 (67.5%)	3,275	2,480 (75.7%)	20명/ 20명 수료	총 19회	우리동네키움센터 6개소, 청소년센터 1개소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과 관련한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채용, 복무관리, 재물조사 누락 등 사무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11년 이상 본 사무를 운영한 위탁기관의 ‘청소년 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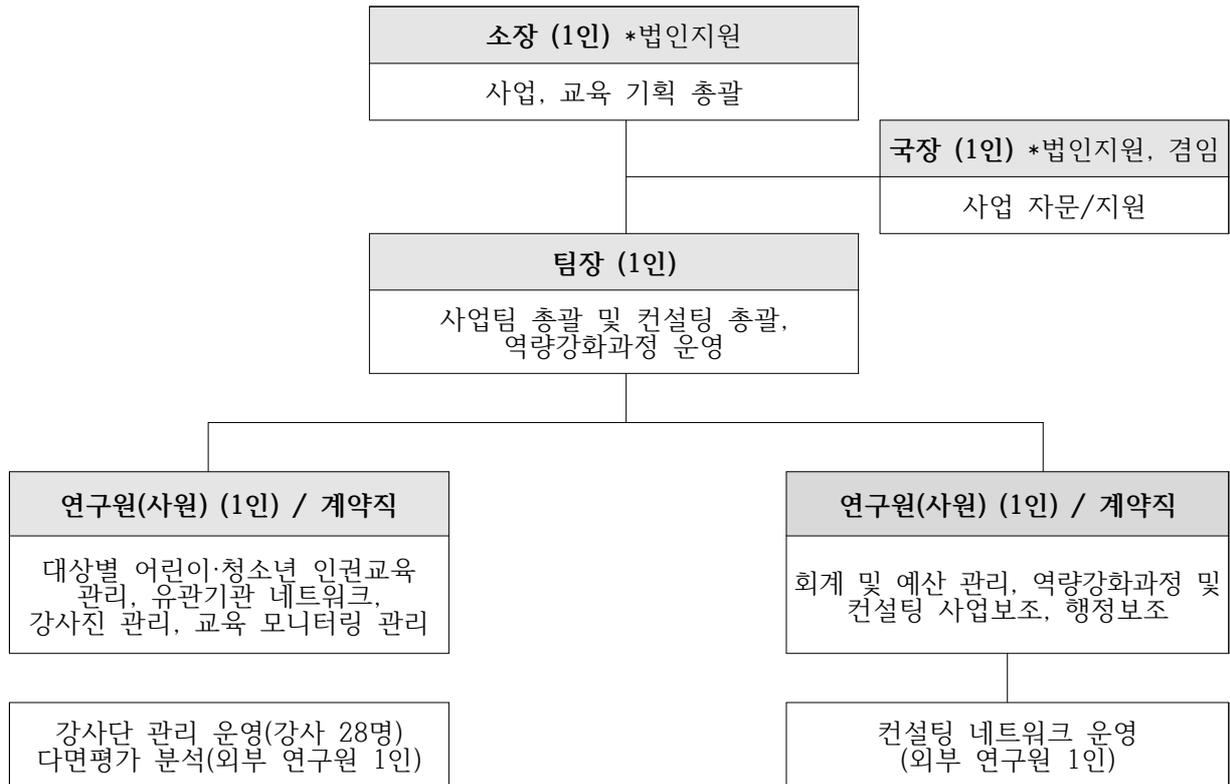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 사무위탁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1년 미만 근무 직원에 대한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조치 완료
	직원 채용 공고 일수 미흡	조치 완료
2023년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예수금 이체 수수료 업무추진비로 지출)	조치 완료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미흡 (포인트 미반납)	조치 완료
	예산 전용 처리 절차 미흡 (내부결재 누락)	조치 완료
	4대 보험 납부액과 원천징수액 차액 발생 (차액분 미반납)	조치 완료
2024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미흡	조치 완료
	재물조사 결과 보고 누락	조치 완료
	휴가 결재 시 사후 결재로 갈음한 사례 다수	조치 완료

- 한편,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아동인권센터는 3개 사업, 6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바, 법인의 전문성과 강사들의 전문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소장 및 국장 2인을 법인에서 본 센터로 파견하고, 강사진 관리, 교육 모니터링 관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행정보조 등을 위해 직원(2명)을 배정하고 있는바,
 - 직원 1명(연구원)이 파견 강사 28명으로 실행하는 인권교육의 품질을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본 센터의 역할이 인권교육의 전문성 활용보다 강사 수급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81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업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보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나.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다. '25.12.31.자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 나. 위탁내용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인권컨설팅 사업
-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라. 위탁기간 : '26. 1. 1. ~ '28. 12. 31.(3년, 재위탁)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마. 소요예산 : 178백만원('25년)

- 인건비 123백만원, 운영비 4백만원, 사업비 51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p>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p>
--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62조(인권교육)

-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홍인재 (2133-4135)